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596

발의연월일: 2021. 7. 20.

발 의 자:소병철・김승남・김정호

김종민 · 김진표 · 류호정

박성준 · 송재호 · 양정숙

장철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그 횟수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음주운전은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 이와 같은 사후적 조치의 한계가 있고 사전적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최근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려는 경우 이를 감지하여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음주운전방지장치가 개발되었고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에서 이러한 장치가 부착된 자동차등의 운전의무를 부과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효과적인 음주운전 예방대책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음.

이에 2회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 받은 사람이 그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다시 음주운전이나 측정불응을 이유로 운전

면허가 취소되고 결격기간이 도과하여 운전면허를 받아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때, 위험물 수송차량이나 여객자동차운송버스, 어린이통학버스 또는 법원으로부터 음주운전방지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자에게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을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이에 따른 처벌조항을 마련하여 상습 음주운전의 사전적 예방효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의 운전의무) ① 제93 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후 운전면허를 받아 다시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아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때에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간 동안 음주운전방지장치(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이를 감지하여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설치된 자동차등만을 운전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적재하여 운반하는 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행하는 차,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에는 운전자의 음주운전 전력 여부와 관계없이음주운전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③ 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차의 교통으로 「형법」 제268조의 죄 중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범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음주운전방지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④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⑤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관할, 부착명령의 준수사항, 부착명령 판결 등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방지장치의 설치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3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 나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 우

제15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 나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 람

제154조에 제3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6.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 거나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된 차의 관리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한 적용례) 제 4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9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신 설>	재 정 안 제44조의2(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의 운전의무) ① 제9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후 운전면허를 받아 다시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운전면허를 받아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때에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간 동안 음주운 전방지장치(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기준에 따른 기간 동안 음주운 전방지장치(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이를 감지하여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설치된 자동차등만을 운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
	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적재하

여 운반하는 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 여 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행하는 차,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에는 운전자의 음주운 전 전력 여부와 관계없이 음주 운전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 다.

③ 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차의 교통으로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가 다시음주운전을 범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음주운전방지장치를 부착하도록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④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판결로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저 ①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 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 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 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8 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 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 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

⑤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비 관할,
부착명령의 준수사항, 투	<u> </u>
판결 등에 따른 조치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디	H통령령
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음주원	<u> -</u> 전방지
장치의 설치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형렁으로
<u>정한다.</u>	
세93조(운전면허의 취소	•정지)
①	

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 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 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 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 다.

1. ~ 3. (생 략) <신 설>

4. ~ 20. (생략)

② ~ ④ (생 략)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저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신 설>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음
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 기준에 적
합하지 아니하게 설치된 자
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4. ~ 20.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네152조(벌칙)
1. (현행과 같음)
1의2.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음

2. ~ 6. (생략)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154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 한다.

1. ~ 3의5. (생략) <신 설>

4. ~ 9. (생략)

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 기준에 적 합하지 아니하게 설치된 자 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 6. (현행과 같음)

1. ~ 3의5. (현행과 같음)

3의6.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되 지 아니하거나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된 차의 관리자

4. ~ 9. (현행과 같음)